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대안)

의안 번호	18779
----------	-------

제안연월일 : 2022. 1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제2111209호)	송옥주	2021. 6. 30.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1. 9. 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제2112363호)	임이자	2021. 9. 1.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2. 5. 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2. 11. 2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2. 12. 1.)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의 유기성 폐자원은 주로 퇴비·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환경오염 우려와 생산된 퇴비·사료의 수요처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적 부담은 줄이고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재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 방식이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것임.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은 에너지 잠재력이 큰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임.

한편,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음.

이를 위해 정부는 순환경제,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순환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기성 폐자원을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등으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바이오
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로
하여금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
원하도록 하는 등 그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공공영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과 민간영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처리 사업자로 정
의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등을 고려
한 회수·생산계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량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을 위한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며, 부가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
스 생산실적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환경부장관이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사. 바이오가스 이용 촉진을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수소제조자·집단에너지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의무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이오가스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성 폐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나.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동·식물성 잔재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

2. “바이오가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폐기물 매립시설의 유기성 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 가스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바이오가스 생산”이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바이오가스 이용”이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전기 생산·열 공급 또는 기체연료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관할 구역에서 유기

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매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민간의무생산자: 제1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

②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유

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등을 고려한 계수(이하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라 한다)를 곱한 값의 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2.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중 민간의 무생산자로부터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을 제외한 양
- ③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④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과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①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2.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
3. 해당 공공의무생산자 이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해당 공공의무생산자에게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

을을 곱한 양

② 공공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①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해당 민간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2. 해당 민간의무생산자로부터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
3. 해당 민간의무생산자 이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해당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② 민간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목표미달성분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한 경우
2. 유기성 폐자원의 물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과징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징금의 산정·감면 기준, 납부 시기·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과징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로 한정한다)에게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된 과징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매년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산정·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제출한 자료에 흠결이 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

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산정·작성 및 보고, 제2항에 따른 시정·보완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2.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3.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 현황
4.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현황

② 환경부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통계에 관한 정보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기성 폐자원의 확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운반·이송하기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운반·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운반·이송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이외의 에너지 작물 등을 유기성 폐자원과 병합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2종 이상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 처리를 위한 유기성 폐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중 수소를 제조하는 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에게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바이오가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이오가

스 운반·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에 비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 등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역 주민의 참여) ①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자는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수익의 제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바이오가스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2.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3.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4.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지원·관리
5.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모니터링 및 운영 컨설팅 등 지원
6.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관리
7. 바이오가스에 관한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대상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9항을 위반하여 과징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

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